

1. 개정이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546호, 2019. 8. 27. 공포, 2021.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의사가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자격증 발급 기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자격증 및 등록대장(안 제3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증(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격증 등록대장(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다. 자격증의 재발급 등(안 제4조의2)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분실경위서(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라. 자격증의 갱신(안 제5조의2)

- 자격증 갱신 절차, 구비서류 명시

마.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안 제11조)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제3항)

바. 진료부 기재사항 변경(안 제13조)

-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 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 사항 명시(제1호 바목)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

아.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안 제14조의3)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별표 1 의3),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신설

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안 제14조의4)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동물보 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합격 결정 등 명시

차.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안 제14조의5)

-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취소 절차, 재지정 등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 조의7)

-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파.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및 반환 대상 확대(안 제28조)

- 동물보건사 신설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근거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조의2(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영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관리기관의 장(이하 “시험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격증 및 등록대장) ①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르며,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3. 최종학력 및 자격취득 근거
4. 자격증 번호 및 발급 연월일
5. 자격취소 또는 자격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제4조의2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7. 제5조의2에 따라 자격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제4조의2(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된 자격을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제3항에서 같다)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자격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자격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자격을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제5조의2(자격증의 갱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을 “전자서명을”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동물에게 조제 또는 투약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다만,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4조의2(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에 고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되어 수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14조의3(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 3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은 별표 1의3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으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4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 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

③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법 제16조의2제2호 및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4.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38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

야 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4조의5(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 인력 등 인적 자원의 적절성
3. 교육시설·환경 및 실습자원의 적절성

② 양성기관이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에 관한 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되,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양성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과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6(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2.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자를 포함한다)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7(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고, 이수시간은 총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실습교육 이수시간은 각각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물 병원 관리

2. 건강 검진

3. 진단 검사 보조

4. 입원·응급 동물 간호

5. 수술 보조

6. 동물보건 관련 법규

7. 동물병원 실습

제28조제1항제1호 및 2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 원

-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제28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의2호의”로 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을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를 “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납입한 응수수료의 100분의 50(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

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3조의2, 제4조의2, 제5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28조제1항제2의2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영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관리기관의 장(이하 “시험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u>

<신 설>

<신 설>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격증 및 등록대장) ①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동물보
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호의2서
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르며,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 및 주소
3. 최종학력 및 자격취득 근거
4. 자격증 번호 및 발급 연월일
5. 자격취소 또는 자격효력 정
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제4조의2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7. 제5조의2에 따라 자격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제4조의2(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
2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된 자격을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제3항에서 같다)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자격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자격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자격을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신 설>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② (생략)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

제5조의2(자격증의 갱신)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자서명을 -----

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분
(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④ · ⑤ (생 략)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
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진료부

가. ~ 마. (생 략)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 (생 략)

④ · ⑤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
사항) -----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동물
에게 조제 또는 투약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
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
민등록번호, 소유자 또는 관
리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다만,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에 고용(「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되어 수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상담,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과 투약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14조의3(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은 별표 1의3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동물 간호 관련 면

<신 설>

허증이나 자격증으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4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

③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
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2 각 호
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응시원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전문학
교 졸업자의 경우 학위증명
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동물
병원 종사증명서(법 제16조의
2제2호 및 법률 제1654호 부
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
증 또는 자격증 사본(법 제16
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에 한한다)

4.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실습
교육 이수증명서(법률 제1654
호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
출할 때에는 법 제38조제2의2호

<신 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4조의5(양성기관의 평가인증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 인력 등 인적 자원의 적절성
3. 교육시설·환경 및 실습자원

의 적절성

② 양성기관이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에 관한 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되,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양성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과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6(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 내에서

<신 설>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2.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자를 포함한다)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7(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법 제16조

제28조(수수료) ① (생 략)

1.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생 략)

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고, 이수시간은 총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실습교육 이수시간은 각각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물 병원 관리
2. 건강 검진
3. 진단 검사 보조
4. 입원·응급 동물 간호
5. 수술 보조
6. 동물보건 관련 법규
7. 동물병원 실습

제2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 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 3. (생 략)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의2호의 -----

-----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 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

-----.

③ 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납입한 응수수료의 100분의 50(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심사기준(제14조의3 관련)

☐ 일반 심사기준

심사분야	세부내용
1. 해당 외국의 제도	(1-1)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1-2) 국적에 따른 면허(자격)시험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
2. 학사운영	(2-1) 국내대학 대비 수업연한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2-2) 국내대학 대비 최소 졸업학점에 차이가 없을 것 (2-3) 국내대학 대비 교과목별 수업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
3. 학사관리	(3-1)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3-2)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4. 신청자 개인	(4-1) 유학비자를 발급 받는 등 합법적 입학·편입학 과정을 거칠 것 (4-2) 전체 수학한 학기(년)가 해당 학위를 받는데 적절할 것 (4-3)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모두 이수할 것 (4-4)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적합한 학위를 취득할 것 (4-5) 해당 면허(자격)를 취득할 것(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또는 자격)

☐ 최소 심사기준

최소 수업연한	최소 졸업학점	임상실습
2년제 대학	72학점	필수

제 호

동물보건사 자격증

1. 성 명:

2. 생년월일(남/여):

사진
(3cm×4cm)

최초 발급일 년 월 일

「수의사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별지 제1호의3서식]

[illegible]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자격번호	발급일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자격							
	년		월		일		시행 제 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	
	출신 학교				졸업일			년 월 일

사유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됨으로 인한 재발급
	[]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
	[] 동물보건사 자격증 갱신
	[] 자격 재부여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재발급 []재부여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수입인지 붙이는 난

첨부서류	1. 재발급의 경우 가.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의1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같습니다) 1장 나. 혈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자격증과 사진 1장 다.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자격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수수료 2,000원(갱신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2. 재부여의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3. 갱신의 경우: 자격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1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	

근거 법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2조의1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된 자격을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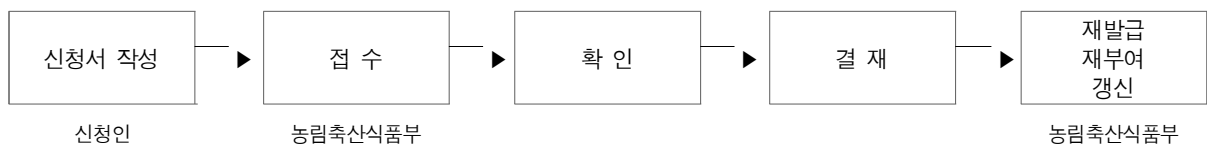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제3항에서 같다) 1장
2. 혈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자격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자격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자격을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제5조의2(자격증의 갱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 절차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

자격번호		발급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분실 경위

위에 적힌 내용은 사실임이 확실하며, 분실된 자격증을 발견하면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년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응시자	응시번호	성명	사진 (3cmX4cm)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외국인의 경우 기재)	성별 [] 남 [] 여	
	전자우편주소(이메일)		
	등록기준지		
	주소		
	최종학교명	학과(전공)	
	졸업여부 [] 졸업 [] 졸업예정	졸업(예정)일	

실습교육 이수	실습교육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총 실습시간
	실습교육 이수 대상(제13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의사법」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위에 기재·표기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응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험관리기관장 귀하

년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표		사진 (3cmX4cm)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 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4. 등록기준지란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적고,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지를 적습니다.
5. 국적란은 외국인만 적습니다.
6. 최종학교란에는,
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그 대학 및 전문대학명을 적습니다.
나.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그 기관명을 적습니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명을 적습니다.
7. 실습교육의 실습기관명란에는 동물보건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양성기관 또는 동물병원에서 받은 실습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8. 실습교육 이수 대상란에는 제13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는 다음의 사람만이 해당란에 ○표합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9. 응시원서에 최종학교명, 실습기관명 및 실습시간 또는 실습교육 이수 대상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10.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기재사항이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3.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표시나 점 표시 또는 난 외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실격 처리됩니다.
4. 부정행위자나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5.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처리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제 호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학교 (교육 기관)	학교(교육 기관)명			
	평가·인증 지정	지정번호	제 호 (지정일)	
이수 실적	이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시간	시간(1일 8시간 기준)		

「수의사법」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교육기관)장

직인

유의사항	이수기간이 비연속적이거나 여러 번 나누어서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기간’ 기재란에 나누어 기재하고, 이수한 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기관별로 1매씩 작성합니다.
------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학교 또는 교육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이메일 주소
	주 소	전화
		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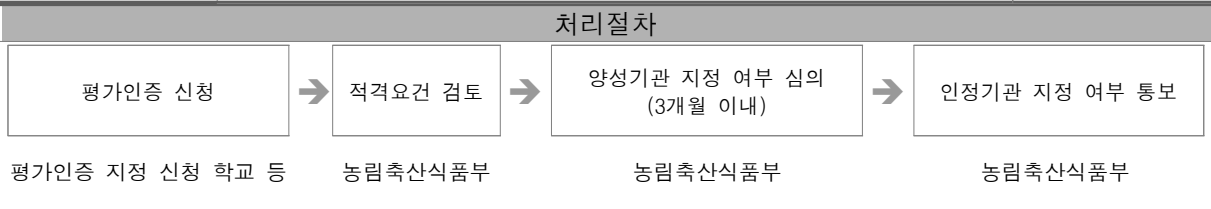
「수의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당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 서류 2. 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교육내용 관련 자료 3. 교육훈련생 및 교육 인력 등 인적 자원 관련 자료 4. 재정 운영, 교육시설·환경 및 실습자원 관련 자료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	--	------------



제 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지정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지정의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의사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보건사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2